

금강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 정	:	2014. 3. 1.
개 정	:	2019. 7. 8.
개 정	:	2021. 2. 15.
개 정	:	2022. 12. 27.
개 정	:	2026. 2. 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47조에 의거 금강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함)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1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석·박사과정 학생 및 입학전형에 합격한 입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6. 2. 11.>

제3조(구분)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 본 대학교에서 지급하는 교비장학금
2. 교외장학금 : 국가, 교·내외 각종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제4조(자격) ①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이며 장래가 촉망되는 자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
3. 수혜요건이 지정된 장학금은 그 요건을 갖춘 자
4.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학업성적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직전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3.40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수혜기간) ①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휴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기까지 장학금은 유효하다. <개정 2026. 2. 11.>

②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이중수혜 제한) ① 장학금은 이중 지급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총장이 필요하여 이중수혜자로 인정한 경우
2. 교내외에서 지급받는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② 교외 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기관의 기준에 의한다.

③ 교내 장학금 지급 후 외부장학금 추천 또는 지정으로 인한 장학금 수혜 총액이 해당 학기의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제7조(장학생 선발) 장학생 선발은 제4조에 따라 자격 범위 안에서 학업성과 품행,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도교수 혹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다만, 교내장학금의 경우에는 학과장의 추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교내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등록 전 장학금액 만큼 학비 감면하여 지급한다.

② 교내장학금이 확정되었다도 교외장학금을 수혜할 경우에는 교외장학금을 우선하여 확정된 지급금액에서 외부장학금만큼 차감한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

③ 교외장학금은 장학금 지급기관 또는 기탁자가 정하는 시기에 지급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이미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였으면 장학금액만큼 장학생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9조(지급중지·회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2. 장학금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3. 자퇴 또는 제적이 될 경우

제10조(종류)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강장학금
2. 원각불교장학금
3. 천태장학금

② 교내장학금의 종류별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15, 2026. 2. 11.>

장학금 종류	장학생 선발 대상	장학금 지급 내용
금강장학금	본 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입학한 타 불교종단 승려와 본교 출신자(석사)로 본 대학원(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1. 2. 15>	입학금 100% 지급
원각불교 장학금	1.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 70% 지급 <개정 2021. 2. 15>
	2.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 50% 지급 <개정 2021. 2. 15>
	3.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40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 70% 지급 <개정 2021. 2. 15>
	4. 본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40 이상인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수업료 50% 지급 <개정 2021. 2. 15>
천태 장학금	1. 본 대학교 설립재단인 대한불교천태종 승려 및 본교 학부 출신자(학사)로 본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연구 및 학업의지를 고취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개정 2021. 2. 15>	입학금 100% 지급 수업료 100% 지급 <개정 2021. 2. 15>
	2. 대한불교천태종 초청 승려로 본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에게 연구 및 학업의지를 고취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개정 2026. 2. 11.>	입학금 100% 지급 수업료 100% 지급 기숙사비 및 식비 100% 지급 <개정 2026. 2. 11.>

- ③ 교외장학금의 신청, 제출서류, 선발방법, 지급인원,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장학금 기탁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사무관장) 본 대학원의 장학금의 업무는 대학원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2. 12. 27.>

제12조(보칙)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0조②)
단, 제10조 2항의 변경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10조(종류) 2항에 대하여는 2021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가. 제5조제1항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나. 제5조제2항에 대하여는 202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